

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감사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11. 26.(금)
제1차 행정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 출 : 2021. 11. 8. 부평구청장
나. 회 부 : 2021. 11. 8. 행정복지위원회 회부
다. 상 정 : 2021. 11. 26. 제247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**【원안 가결】**

2. 제안설명 (요지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(2022. 1.13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기준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감사청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「지방공무원법」인용 조문 변경 (안 제1조, 안 제2조)
 - 제16조를 제21조제1항으로 변경
- 주민감사청구서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와 연령 변경 (안 제2조)
 - 19세 이상의 주민 200명 이상으로 하는 현행에서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변경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요지)

- 가.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」(2022. 1.13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기준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,
- 나. 각 조의 「지방자치법」인용 조문을 현행 “제16조”에서 “제21조제1항”으로 변경하고, 제2조(감사청구 주민수)의 주민감사청구서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와 연령을 현행 “19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”에서 “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”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주민감사청구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4. 질의답변 (요약)

- 특이사항 없음

5. 토 론

- 김환연 위원 “원안 동의”

6. 심사결과

- 만장일치 “원안 가결”